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당첨자 본인 성명 기재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당첨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	
	주소(법인소재지) 당첨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기재	(휴대)전화번호 당첨자 본인의 연락처 기재	
① 자금 조달 계획	②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으로 조달하는 금액(본인 명의의 예금(적금) 등)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당첨자 본인 명의의 주식, 채권, 이에 준하는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	
	④ 증여·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, 펀드·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,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회수 등 이에 준하는 자금 기재 원	
	자기 자금 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 ④번에 해당시 자금을 제공한 모든 자와의 관계 기재 (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 후 기재)	[] 보유 현금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현금 [] 그 밖의 자산(종류: 현금이 아닌 자산종류 기재)	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 소유 타 부동산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종전부동산권리가액 등으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	⑦ 소계 ②+③+④+⑤+⑥ 합계 금액 원	
① 자금 조달 계획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우측 대출금액 합계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합계(주택담보대출 + 신용대출 + 그 밖의 대출금) 원	주택담보대출 (중도금대출 실행시 공란) 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 그 밖의 대출 금회 중도금 대출 및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(금회 중도금 집단 대출시 당첨된 동·호수 분양가의 50%) 원 (대출 종류: 예) 중도금대출)	
	차입금 등 위의 주택 담보대출 금액 기재시에만 작성 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() 건	예)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조달 하는 경우 보유에 체크 후 건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모두 기재 (건수에 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한 그 외 분양권 및 입주권, 부부 공동명의의 지분소유 포함하여 기재) 예) 무주택자의 경우 금회 취득하는 주택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고 후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면 미보유에 체크	
	⑨ 임대보증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·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 사용 시 기재 원	
	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 시 금액 기재 원	⑫ 소계 ⑧+⑨+⑩+⑪ 합계 금액 원	
⑪번 해당시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 기재 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		
⑬ 합계	※ ⑦ + ⑫ [총 금액] 당첨된 동·호수의 공급금액 + 발코니확장금액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 원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(당첨된 동·호수의 공급금액 + 발코니확장금액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) 원	
	⑮ 계좌이체 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(당첨된 동·호수의 공급금액 + 발코니확장금액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) 원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작성생략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작성생략	
지급사유	작성생략		
⑯ 입주 계획	해당부분 체크 및 작성 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2024년 3월)	⑱ 변항목 기재시 필수 체크 [] 임대 (전·월세)	작성 생략 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날짜 공란 년 월 일

제출인 : **당첨자 본인 서명 기재** (인)

※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 3조에 의거 조정대상지역내 모든 주택의 거래시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·입주권 전매를 포함)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관할 소재지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정확한 작성을 위해 연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